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천일엽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화〉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57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천일염의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화	3
[첨부자료]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6. 12.

3. 회 부 일 : 2024.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에게 소금 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소금이력제가 의무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어, 이력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으며, 생산지와 유통이력을 숨긴 뒤 중국산과 섞어서 파는 이른바 ‘포대같이’ 행위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연한 실정임.

또한, 염전노동자를 불법으로 노동착취한 염전사업자 등의 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는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소금이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천일염의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¹⁾ 생산자 등을 이력 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① (생략)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신설>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u>천일(天日)염</u>
<신설>	2. 그 밖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u>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천일(天日)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 이를 분쇄·세척·탈수한 소금을 포함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현행법”이라 함) 제27조는 수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등록제도’의 운영 근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²⁾

- 현행법은 이력추적관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³⁾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 동 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품목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위해 발생의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산물 등 중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2.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위해 발생의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산물
2.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로서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3. 그 밖에 취급 방법, 유통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이력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산물

□ 개정안은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⁴⁾ 생산자 등을 이력 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종전에는 소금 생산·유통 및 판매업자의 자율로 되어 있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법	개정안
의무 등록 대상 품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국민 건강에 위해 발생 우려 수산물로서 신속한 조치 등이 필요한 수산물 등 중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현재 관련 고시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 <u>천일염</u>
업체 범위	생산 · 유통 · 판매업자	

이는 천일염 유통과 관련하여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중국산과 섞어서 파는 이른바 ‘포대갈이’ 행위의 발생,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 우려, 염전노동자를 불법으로 노동착취한 염전사업자 등의 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천일염 생산자 등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에게 소금 이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4)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천일(天日)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 이를 분쇄·세척·탈수한 소금을 포함한다.

□ 다만, 천일염을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생산 단계는 물론 유통·판매 단계까지 이력등록이 의무화되는데, 현재 천일염 생산업체 928개소⁵⁾ 중 868개소가 이력추적관리를 등록 중인 데 반하여 유통과 판매 업체는 각각 37개소, 1개소만이 등록 중이며 전체 업체 수가 파악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업체의 자율적 등록과 의무적 등록으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의무 등록 품목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로 위임하면서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⁶⁾, 현재 고시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의무 등록제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검토 시 의무 등록제의 시행여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생산업체 현황은 ☞ [첨부자료] 참조

6)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관련 벌칙·과태료 규정 현황]

처벌	위반행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59조(1호)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에 이력표시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2호) 이력표시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산물이나 수입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3호)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을 이력표시 수산물로 광고하거나 이력표시수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61조(9호)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63조(1호)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호)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호)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른 입고·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 관계 부처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천일염을 전면적으로 이력등록 의무화 품목으로 지정하기에는 현장 수용성 등 한계⁷⁾가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에서 천일염만 법률상 의무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다른 수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형평성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력제 의무화 품목을 현행과 같이 고시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2

7)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생산단계를 제외한 유통, 판매 단계에서는 이력 정보 입력,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인데, 전면 의무화 시행 시 유통·판매업자 등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충분한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임.

< 허가 및 가동염전 현황 >

년도	구분	허가업체 수 (개소)	허가염전면적 (ha)
2023년	전국	928	3,524
	전남	863	2,803
	전남 외(기타)	65	721
2022년	전국	925	3,559
	전남	861	2,834
	전남 외(기타)	64	725
2021년	전국	956	3,659
	전남	890	2,890
	전남 외(기타)	66	769
2020년	전국	1,003	4,074
	전남	930	3,055
	전남 외(기타)	73	1,019